

일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본에 도착한 모든 분들께서는 입국과 출국 시에 세관절차를 올바르게 거쳐야 합니다.

이 팸플릿에서는 해외에서 일본에 도착한 분들께 세관 절차 및 제한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여행자 휴대품은 어느 정도까지 면세되는가?”, “면세점에서 물품을 살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일본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 반입이 제한된 물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팸플릿이 신속한 세관검사를 받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관상담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국시 신고

(“휴대품·별송품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세관에서는 해외에서 입국(귀국)하는 모든 분들께 반입이 금지·제한된 물품의 유무와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적절한 통관을 위해 ‘휴대품·별송품 신고서’ 1매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신 후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별송품이 있는 경우, 신고서를 2매 제출해 주십시오.

일본 세관에서는 전자 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Visit Japan 웹을 통해서 세관 신고서의 전자 작성이 가능합니다. 공항 도착 후 전자신고 단말기로 신속하고 전자신고 게이트를 이용하면 기다리지 않고 원활하게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Visit Japan Web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청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Visit Japan Web



여러분의 편안하고 쾌적한 여행을 지원합니다-세관전자신고 게이트

검사대 선택

세관에는 녹색과 적색의 검사대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서는 아래의 세관 검사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녹색검사대: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적색검사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면세범위를 초과했는지 모르는 경우 관세는 세관감사장에 있는 은행(은행이 없을 때는 세관 공무원)등에 납부하십시오. 또한 스마트폰 앱결제, 신용카드도 사용 가능.

※ 단, 과세가격이 30 만 엔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 무역화물과 동일한 수입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면세범위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개인적으로 사용된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하기의 표 범위 내에서 면세됩니다(단, 쌀은 1년간 100kg 이내). 휴대품과 별송품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양쪽 모두를 합하여 면세 범위를 적용합니다.

의류, 화장품 등 여행자 본인이 일본 체류 중에 사용할 신변용품이나 직업 용품으로 세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 이와와 같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 등에 맞는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품명	수량 또는 가격	비고
주류	3병	1병 760ml
담배*	궤련	200개비
	전자	10갑
	엽궤련	50개비
	기타 담배	250g
향수	2온스	1온스는28ml
기타물품	품목당 해외시가의 합계 금액이 1만 엔 이하의 물품	전량
	기타경우	20만 엔
		아래 면세범위 금액 20 만 엔에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휴대품 품목당 해외시가의 합계금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 엔 이내의 물품은 면세되고 나머지 물품에 과세됩니다. 1개당 20만 엔을 초과하는 물품은 전체에서 20만 엔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금액에 과세됩니다.

(주의):

- 상품이나 상업용 샘플(상업용 샘플은 과세가격 합계금액이 5천 엔 이하의 물품은 제외합니다.)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입니다.
- 쌀에 대해 면세 적용을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지방농정사무소에 제출한 ‘미국 수입에 관한 신고서(세관제출용)’를 세관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사화물

일본에 1년 이상 체류한 후 이사하는 자 본인 또는 가족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세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사화물에는 이사하는 본인 또는 가족들이 사용했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일본 입국 전에(선박 및 항공기는 일본 입국 전 1년 이상)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으면, 위와 같은 자동차 등도 포함됩니다.

또는 이사 이외의 목적으로 일본에 일단 반입했다가 1년 이내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자동차 등도 면세됩니다.

세율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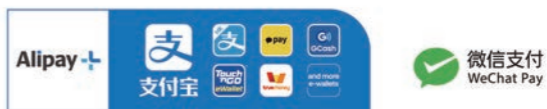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관세,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상 초과하는 부분에 다음과 같이 간이세율을 적용합니다.

품명	세율
주류	1리터 당
위스키,브랜디	800엔
럼주,진,보드카	500엔
리큐어	400엔
소주 등	300엔
기타(와인, 맥주 등)	200엔
담배	1리터 당
전자	(1) 궤련형 전자담배 (2) 전용 담배 캡슐 및 카트리지를 소매용으로 세트 포장한 것 ※카트리지를 등만 포장하여 판매되는 것 포함
	15엔/개 50엔/캡슐 50엔/카트리지
기타 물품	15%

관세등 캐시리스납부

스마트폰 앱결제, 신용카드 사용 가능
스마트폰 앱결제



LINE Pay는 나라타국제공항, 하네다공항, 간사이국제공항, 주부국제공항, 후쿠오카공항, 신치토세공항, 나하공항에서만 이용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별송품

별송품이 있는 경우에는 ‘휴대품·별송품 신고서’ 를 세관에 2매 제출해 주십시오. 2매 중 1매는 세관에서 확인 도장을 찍은 후 돌려드립니다.

별송품의 경우에는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반입되는 것으로 별송품을 반입 신고할 때에 세관의 확인 도장을 받은 ‘휴대품·별송품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면세범위 및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아 반입할 수 있으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 주십시오.

수하물을 우편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송품의 외장(外裝)에 ‘별송품(Unaccompanied Baggage)’ 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일반 우편물로 취급되어 ‘국제우편물 과세통지서’가 발송될 수도 있습니다.

현금 등의 반출입

현금 등을 일본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제한은 없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입국 또는 출국 시 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휴대한 현금, 수표(여행자 수표를 포함), 약속어음, 유가증권이 100만 엔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외국 통화 및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
- 휴대한 금지금(순도 90%이상)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

